17~18세기 한성부 화재실태와 도시재해 시스템의 운영

유승희*

〈차 례〉

1. 머리말
2. 금화(禁火)기구의 운영
3. 5부 민가의 화재발생 양상과 특징
4. 구화(救火)시스템의 정비
   1) 실화단자(失火單子)의 작성과 보고
   2) 구화작업과 구화기구의 정비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후기 한성부의 화재발생 양상과 도시 방재 시스템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살펴본 것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후기 금화업무는 관-관 협조체제 하에 다원적으로 이루어졌다. 한성부의 경우 수성금화사의 혁파 이후 소방업무는 한성부, 병조를 중심으로 5부, 포도청, 순청, 삼군영 등에서 담당하여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다원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병조는 순청과 포도청으로 부터 실화보고를 받는 최종적인 관사로 금화업무에

*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

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둘째, 화재진압 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시스템이 강조되었다.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압을 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역할이 조정되어 궁궐 숙위와 구화활동에 대한 업무의 명확성이 구분되었다. 삼군영의 경우 숙위 업무를, 관사의 관원, 공인, 5부 방민 등은 구화 업무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5부의 방민이 지역별로 관사 및 궁궐에 소속되어 화재시 구화활동을 하는 관-민의 공조 시스템도 작동하였다.

셋째, 한성부의 경우 도성 밖 화재가 많았다. 지역적으로 서부 반석방, 반송방, 용산방에서 다수 발생했는데, 대부분 경강주변의 강촌이었다. 도성 밖 지역의 경우 삼군문과 포도청의 순라시스템이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정비되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정비된 도성 안보다 쉽게 화재에 노출되는 경향이 많았다.

주제어: 한성부, 화재, 금화, 수성금화사, 순청, 삼군영, 순라

1. 머리말

지난 2008년 숭례문 방화사건은 목조건물의 화재가 단시간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편, 이 사건을 통해 조선시대 화재양상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 최신식의 소방시스템을 구축한 현대사회와 달리 전통시대에서는 소방전담 관사나 소방기구, 화재 시 구화(救火)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 등이 미비했다. 건축물 또한 대부분이 목조였기 때문에 인접 건물로의 연소 위험은 컸다. 따라서 인가가 조밀한 주택지역의 화재일 경우 순식간에 동리 수십 호가 소실되는 대형화재로 이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조선시대 도시 방재체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경우 도시 운영에 위기를 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재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재해의 정의는 인간이나 사회가 일정 지역 내에서 돌발적, 혹은 항상적으로 받는 집단적인 피해를 가리킨다. 피해를 주는 원인으로는 돌발적 자연재해인 홍수, 태풍, 지진, 한재 등의 기상재해가 있는 반면,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한 인공재해도 있다. 본고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도시 위기가 아닌 인재에 주목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 분야의 연구는 역사학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조선초기 발생한 수해와 청계천 개천 공사 등 국가의 방수(防水) 정책과 함께 금화도감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고찰했으며, 서울의 청소상태와 함께 소방제도도 살펴보았다.[1] 최근에는 한성부 화재발생의 특징, 화재전문기관으로서의 금화도감의 성격, 국가의 금화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 조선초기 금화체제는 화재예방 뿐 아니라 도시 시설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근세도시 한성부를 재정비하는 역할을 했음을 밝혔다.[2]

이처럼 선행 연구의 경우 소방제도를 고찰했지만 금화도감의 설치나 예방책만이 간략하게 다루어져 있으며, 시기적으로도 조선초기에 집중되어 있어 도시가 과밀화되는 조선후기 한성부의 금화체제와 도시화재 실태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조선후기에는 홍수, 화재로 인한 도시의 피해가 많았다. 임란

---

1) 김용국, 「近朝鮮初期 서울의 防水防火대책」, 『향토서울』 3,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1958 ; 손정목, 「청소상태와 소방제도」, 『조선시대 도시사회연구』, 일지사, 1977 ; 정태헌, 「조선초기 禁火施策에 관한 연구」, 『동국사학』 23, 동국대학교사학회, 1989.

2) 류승희, 「조선초기 한성부의 화재발생과 금화도감의 운영」, 『서울학연구』 19,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2.

이후로 조선전기 이래 소방 전담기구를 담당했던 수성금화사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도시의 위기상황은 높아지는 추세였다. 더욱이 조선후기 한성부의 인구 증가로 주택의 밀집도는 높아져 화재의 위험성이 전기보다 오히려 더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수성금화사가 혁파된 상황에서 한성부 화재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는 어떤 시스템 하에 운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성금화사 혁파 이후 소방 업무를 담당했던 관사들을 검토할 것이며, 실제 화재양상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재발생시 소방업무를 담당한 관사들이 어떠한 체제 하에 구화활동을 하는지 실화단자의 보고, 구화작업과 구화기구 등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2. 금화(禁火)기구의 운영

조선초기에는 1426년(세종 8) 한성부 대화재[3]를 계기로 '금화도감'이라는 소방전담 기구가 설치되어 도성의 화재를 담당하였다. 이후 금화도감은 성문도감(城門都監)과 병합되어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으로 운영되다가 1481년(성종 12) 수성금화사라는 정4품아문으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수성금화사는 궁성과 도성의 성곽 수리 및 궁궐·관청의

3) 1426년(세종 8) 한성부에 이틀간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여 행랑 114칸을 비롯하여 인가 2,400여 호가 소실되었다. 인명 피해는 남자 9명, 여자 23명으로, 이는 사망자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였다. 노 장룡의 집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화재는 경시서 및 북변 행랑 등 관서를 비롯하여, 중부, 동부, 남부 인가 2,200호를 태웠고, 다음날에는 중부 서린방의 일반 민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옥서와 행랑 뿐 아니라 인가 200여 호가 소실되었다(『세종실록』 권31, 세종 8년 2월 기묘).

청사, 경성 5부 민가의 금화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라고 하여 도성 화재 시 소방을 전담하는 임무를 띠었음을 알 수 있다. 도제조 1인을 중심으로 제조 2인, 제검(提檢) 4인, 별좌(別坐) 6인, 별제(別提) 3인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제검 3인은 사복시, 군기시, 선공감의 정(正)이 겸임하였고, 별좌는 의금부의 경력(經歷)과 병조·형조 및 공조의 정랑이 겸임하였다. 별제는 한성부의 판관이 겸임하였다.[4)]

이처럼 수성금화사는 소방을 담당한 독립 관사였지만, 의금부, 병조, 형조, 공조, 한성부, 5부, 사복시, 군기시 등 여러 관사의 관원들이 임무를 겸임하였다. 병조는 관사들을 5부에 분속하여 구화패(救火牌)를 발급했으며, 한성부 5부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병조, 의금부, 형조, 한성부 및 수성금화사의 관원들이 각기 소속 부원(部員)을 인솔하고 달려가 소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의금부는 의금부의 나장과 사복시 및 군기시 소속 하례 중에서 각각 1인을 화재감시인으로 배정하여 상시로 종루에 올라가 화재여부를 간망하게 하되 이궁, 관사, 5부 방민의 가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종을 치도록 하였다.[5)] 수성금화사를 중심으로 의금부, 한성부, 형조, 공조, 병조 등 주요 관사의 동조체제 하에 소방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수성금화사는 17세기 초반까지 지속되다가 1637년(인조 15) 여러 관서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폐지되었다.

> 이조가 회계하기를, "내자시는 내섬시에 병합하고, 사섬시는 제용감에 병합하고, 풍저창은 장흥고에 병합하고, 사축서는 전생서에 병합하고, 혜민서는 전의감에 병합하소서. 금화사는 가장 쓸데없는 관청이니 완전히 혁파하고, 종부시는 종친부에 병합하소서. 그러나 종

4) 『경국대전』 권1, 이전 경관직 수성금화사.
5) 『경국대전』 권4, 병전 금화.

> 부시의 경우는 종친을 규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인데 만일 종친부에 병합한다면 규검하는 일이 폐지될 것이므로 병합하는 것이 부당한 듯합니다. 아울러 묘당에게 논의하소서."하였는데, 묘당에서 모두 옳다고 하니, 상이 따랐다. 그 후 내자시와 혜민서는 오래지 않아 다시 설치하였다.[6]

1637년 이조는 성격이 유사한 관청들을 통합하여 관사의 수를 감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자시, 사섬시, 풍저창, 사축서, 종부시가 각각 내섬시, 제용감, 장흥고, 전생서, 종친부에 병합되었고, 수성금화사는 혁파되었다. 수성금화사의 혁파 이유는 관청으로서 효용성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후 수성금화사의 업무는 한성부와 병조가 분장하여 수성(修城)의 임무는 병조가, 금화의 업무는 한성부가 담당했으며 밤에는 순청(巡廳)이 주관하였다.[7] 이로서 관청과 방리(坊里) 각 호의 소방을 전담하는 수성금화사는 1426년(세종 8) 설치되어 여러 차례 치폐를 거듭한 끝에 1637년에 완전히 혁파되었다.

이후 1668년(현종 9) 궐문 밖 여가 및 남부지역의 인가 76호가 소실되는 등 한 달 사이에 한성부 내에서 3건의 대형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자, 금화 전문 기구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기도 하였다.

> 상이 말하기를, "여염의 화재가 근일 더욱 심하여 연소(延燒)된 것이 매우 많으니 일의 정세가 더욱 놀랍다. 실화한 곳은 만약 그 인가를 철훼하면 연이어 타는 염려는 없을 것 같다."하니, 정태화가 말하기를, "옛날에는 금화사(禁火司)가 있어 여염의 화기는 쇠갈고리(鉤鐵)와 동아줄(大索)로 이웃의 인가를 무너뜨려 연소하는 폐를 막았다고 합니다."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금화사는 비록 갑자기 복설할 수 없으니 병조로 하여금 기계와 군졸을 준비하게 하고 한성부 관원으로

---

6) 『인조실록』 권 34, 15년 3월 8일 정미.

7) 『文獻攷略』 권8, 革罷諸司 繕工監修城禁火司.

하여금 금화를 담당하게 하라.…”[8]

영의정 정태화는 과거 도성 내 화재시 수성금화사가 구화(救火) 기구를 이용하여 이웃의 인가를 무너뜨려 연소를 방지했음을 거론하며 구화작업에 대한 금화사의 실용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종은 관사의 갑작스런 복설은 불가능하므로 한성부로 하여금 내외 금화의 일을 주관하게 하였으며 병조에게 화재에 대비하는 구화기구와 구화군을 갖추게 하였다. 이와 함께 한성부 도성 밖 10리를 경계로 금화구역을 나누어 도성에서 10리 안의 사산(四山)에 소속된 곳은 한성부에서, 10리 바깥 지역인 양주(楊州)에 속하는 곳은 해당 주에서 금화를 관장하게 하였다.[9]

정조 또한 수성금화사의 복설의견을 내놓았다. 정조대 서부 용산방에 화재가 발생하여 98호 900여 칸이 소실되자 수성금화사의 복설을 주장하였다. 정조는 과거 수성금화사가 설치된 것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고 지적하며, 준천사에 합속시켜 도청 1인을 차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관제를 쉽게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는 홍국영의 말에 의해 중지되었다.[10]

그렇다면 수성금화사가 혁파된 이후 한성부 도시 화재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수성금화사 혁파 이후 관사의 업무 가운데 수성의 임무는 병조가, 금화는 한성부가 담당하였다. 병조의 경우 무비사(武備司)에서 개화(改火)와 금화의 사무를 주관하였다.[11] 조선후기에는 금화의 임무를 순청(巡廳)에서도 담당

---

8) 『승정원일기』 207책, 현종 9년 3월 15일, “上曰 閭閻火患 近日愈甚 至於延燒甚多 事極驚慘 失火之處 若撤毁其隣家 則似無延及之患矣 鄭太和曰 舊有禁火司 閭閻火起 則以鉤鐵及大索 毁倒隣近家 以防延燒之患云矣 上曰 禁火司 雖不可猝然復設 而令該曹 備給器械及軍卒 使漢城府官員次知禁火…”

9) 『현종실록』 권14, 현종 9년 3월 23일 신유.

10) 『승정원일기』 1423책, 정조 2년 윤6월 1일.

11) 『萬機要覽』 軍政編 2, 兵曹 總例.

하였다. 순청은 주로 도성 내 순라를 담당했기 때문에, 밤 시간대의 금화업무를 주관하였다. 좌우순청은 구역을 나누어 순행하며 화재예방 뿐 아니라 화재발생시 구화 업무를 담당하였다. 좌순청의 구역은 종각부터 동쪽으로 순장, 감군 각 1명이 역원(役員) 1명과 군사 2명을 거느리고 순행하였고, 혜화문, 흥인문, 오간수문, 광희문에 추첨군(抽籤軍) 3명, 수첨군(收籤軍) 1명을 두었다. 우순청의 구역은 종각에서 서쪽 부분으로 숭례문, 돈의문, 창의문, 숙정문을 담당하였다.[12]

한때 순청의 순장과 감관의 혁파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담당한 금화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논의에 그칠 정도로 순청은 화재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 (윤)휴가 말하기를, “순장의 일은 듣건대 유혁연이 혁파가 불가하다고 하니 하순하는 것이 어떠합니까”하니 (유)혁연이 말하기를, “순장은 비록 용관과 같을 지라도 혁파할 수 없는 것은 대개 포도군졸이 모두 악소배로 만약 순장의 견제가 없다면 폐해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포도군졸은 이미 순군을 꺼리고 순군 또한 포도군졸을 꺼려 서로 견제하여 감히 작간하지 않으니 이것은 관계한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금화사 혁파 후 금화의 일은 오로지 순청에 속해 있어 더욱 혁파할 수 없습니다.”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순군이 매우 많았으나 지금은 수효가 적다.”하니 휴가 말하기를, “혁연의 말로 보면, 순군은 마땅히 늘려야지 줄일 수 없습니다.…”[13]

---

12) 『萬機要覽』 軍政編 1, 巡邏.

13) 『승정원일기』 251책, 숙종 2년 2월 9일, “… 鑌曰 巡將事 聞柳赫然 以爲不可罷云 下詢如何 赫然曰 巡將雖似冗官 而有所不可罷者 蓋捕盜軍卒 皆是惡少輩也 若無巡將之相制 則□□必多矣 捕盜旣憚巡軍 巡軍亦憚捕盜 互相維制 不敢作奸 此其所關非輕 且禁火司革罷後 禁火一事 專屬之巡廳 尤不可罷也 上曰 古則巡軍甚多 今則零星矣 鑌曰 赫然之言觀之 則巡軍似當增之 不可減也 …”

1676년(숙종 2) 숙종은 총관(摠管)과 순장의 혁파를 주장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순청의 순장과 감군을 실속이 없는 한가한 직임으로 여겨 혁파하고자 하였다. 이에 비변사에서는 제도의 변경과 관련된 것이므로 가볍게 처리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14] 위의 기사는 이러한 숙종의 의견에 대한 대신들의 논의과정이다. 이조판서 윤휴, 특진관 유혁연 등 대신들은 포도군졸과 순군의 상호견제작용으로 이들의 작간이 발생하지 않는 점과 순장이 담당하는 금화업무의 중요성을 이유로 이들의 혁파를 반대하며 오히려 순군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의 과정에서 수성금화사 폐지 후 금화에 관한 일은 전부 순청에서 담당하여 소방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수성금화사의 경우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방리 각 호를 방울을 흔들며 순찰하여 화재를 대비하였는데,[15] 혁파 이후에는 순청이 이를 대신했던 것이다. 이 같은 순청의 역할은 종루 인근 실화시 검찰을 하지 못한 순장을 파직하고 추국하라는 숙종의 지시에서도 재차 강조되었다.[16]

한편, 도성 내 금화에 있어서 삼군영의 역할도 주목할 수 있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듣건대 국장도감의 야소(冶所)에서 불이 나가가 12칸이 모두 불에 탔다고 합니다. 막중한 돈장(敦匠)의 처소에서 삼가지 않아 이처럼 불이 났으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해당 별공작 낭청은 도감에서 이미 초기(草記)로 죄를 논하였습니다만, 부내(部內)의 화재는 아무리 평범한 여염집이라 하더라도 한성부와 포도청 및 구역 안의 영문(營門)에서 달려 와 구화하고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이 법의 인데, 하물며 이처럼 중요한 역소에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도감이 초기한지 오래된 후에야 보고하였으며, 영문은 당초에 와서 구화하지 않았

14) 『비변사등록』 32책, 숙종 2년 2월 5일.
15) 『대전회통』 권4, 병전 금화.
16) 『승정원일기』 253책, 숙종 2년 4월 13일.

> 으니 사체로 보아 모두 너무나 놀랍습니다. 당해 한성부 당상과 포도대장 및 구역 안의 영문대장을 모두 파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17]

위의 국장도감 야소의 실화를 논하는 기사에서 5부의 화재발생 시 일반 여염집의 실화일지라도 한성부, 포도청, 구역 내의 영문이 달려와서 구화하는 것이 원칙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한성부 전 지역의 순찰은 형조 소속인 좌우포도청과 좌우순청에서 담당하였으나, 17세기에 이르러 무뢰배에 의한 우마 절도가 극심해지자, 훈련도감에 순라의 임무가 부여되기 시작하였다.[18] 이후 18세기에 이르면 도성 순라의 임무는 훈련도감 뿐 아니라 어영청과 금위영에도 분장되어 한성부 5부를 8패로 나누어 1패에서 4패는 도성 안 지역을, 5패에서 8패는 도성 밖을 순찰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었다. 도성 안의 경우 훈련도감은 종각에서 돈의문 남북지역, 관현, 이현 일대를, 금위영은 흥인문 주변지역과 돈의문에서 안국동, 삼청동 일대를, 어영청은 오간수문을 기준으로 천변을 따라 광통교까지 이르는 지역과 돈의문 남북에서 종각까지로, 주로 청계천 주변을 순찰하였다. 도성 밖 지역은 훈련도감의 경우 동대문과

---

17) 『비변사등록』 191책, 순조 즉위년 9월 15일.

18) 선조대 포도군사의 수가 많지 않아 순라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자, 훈련도감의 포수와 살수를 5영으로 나누어 한성부의 치안업무를 임시적으로 부여하였다. 1625년(인조 3)에는 綾城君 具宏이 포도청의 포도 업무가 효과적이지 못함을 지적하며, 과거 도감군에게 한성부 지역을 순라하게 한 경험에 따라 치안유지에 이들의 동원을 주장하였다(金鍾洙, 1996, 『朝鮮後期 訓鍊都監의 設立과 運營』,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86쪽). 또한 1627년(인조 5) 마적이 극성하여 도성 내외 사족의 부녀 및 조관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탄 말이나 집안의 말을 약탈해 가자, 정부에서는 훈련도감으로 하여금 砲手將官을 분정하여 가로를 순라하게 하였다(『승정원일기』 17책, 인조 5년 정월 20일). 1637년(인조 15)에는 도성에 유언비어가 나돌아 훈련도감에서 별순라를 배치하였다(『승정원일기』 60책, 인조 15년 8월 23일).

남대문 밖 지역에서 경강인 서강, 한강, 두모포에 이르는 곳을, 금위영은 홍제원에서 모화관, 아현을 거쳐 이태원 주변지역과 마포에서 서빙고, 토정에서 망원정에 이르는 경강 구역의 순라를 담당하였다. 어영청은 동대문 밖 왕십리, 제기동, 종암동, 수유현까지 순라를 했으며, 남대문 밖은 청파, 서빙고, 마포, 용산, 양화진을 행순하였다.[19]

이처럼 행순의 목적 중 하나가 도적 및 화재의 예방뿐 아니라 화재발생시 달려가서 구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여 삼군영 또한 소방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실제 삼군영의 군인들이 실화처에 와서 구화에 동원되었으며, 이를 실행하지 않은 영문대장을 파직하는 기사에서 삼군영이 금화업무에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금화부장(禁火部將)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다.

> 영접도감이 아뢰기를, "즉자에 차비역관이 와서 말하기를 부칙(副勅)의 방 앞 툇마루에서 화로의 불로 인해 약간의 연소처가 있는데, 부칙이 금화부장이 능히 신칙하지 않아 이러한 우환에 이르게 되었으니 금화부장 2인을 잡아들여 通官으로 하여금 곤장 각 1대를 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부장은 금화를 담당하는데 이러한 일이 생겨나니 극히 놀랍습니다. 해당부장은 유사로 하여금 수금하게 해서 과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하였다.[20]

금화부장은 1649년(효종 즉위) 영접도감의 가가에서 화재가 발

---

19) 『만기요람』 군정편 1, 순라; 군정편 2, 訓鍊都監城內外巡邏字內; 군정편3, 禁衛營城內外巡邏字內, 御營廳城內外巡邏字內.

20) 『승정원일기』 549책, 경종 3년 정월 22일, "以迎接都監言啓曰 卽者差備譯官來言 副勅房前退抹樓 因爐火有若干延燒處 副勅以爲 禁火部將不能申飭致有此患 其部將二人捉入 使通官決棍各一度云 部將旣爲次知禁火 而有此生事 極爲痛駭 當該部將 令攸司囚禁科罪何如 傳曰允."

생했다는 기사 속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21] 위의 사료를 통해서는 1723년(경종 3) 영접도감 내 금화부장의 존재가 2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병조, 한성부, 순청의 금화업무와 달리 관사 내 금화를 담당하는 부장이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금화부장의 존재는 1677년(숙종 3) 창덕궁 인정전 실화 후 별도로 금화부장 1인을 차정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지사 김석주가 계하기를, "근년 인정전 실화 후 금화부장 1인을 별도로 차정하여 그들에게 밤마다 순검하게 하였는데 금화부장 무리들이 윤번하여 구애되는 일이 많아 1인이 밤에 순검하기에 이른 것으로 착실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금화부장을 줄이고 4소 순경부장으로 하여금 순경할 때 금화의 임무를 겸찰하도록 하며 만일 실화한 일이 있을 경우 해당 순경부장을 추책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의거한대로 하라"고 하였다.[22]

위 기사에 따르면 숙종은 여러 명의 금화부장이 윤번으로 일을 담당하는데 따른 폐해가 발생하자, 1인을 별도로 차정하여 그로 하여금 순검을 전담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금화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금화부장의 수를 줄이고 4소 순경부장으로 하여금 순경할 때 금화의 일도 겸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밖에 영조대에도 묘소도감 당상에게 금화부장 2인을 차정해 금화를 담당하도록 지시하고 있어[23] 금화부장이 궁궐, 왕릉, 영접도감 등에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1) 『승정원일기』 108책, 효종 즉위년 10월 11일.

22) 『승정원일기』 261책, 숙종 3년 8월 25일, "知事金錫胄所啓 頃年仁政殿失火之後 禁火部將一人 別爲差定 使之巡夜 禁火部將輩輪番 多有拘礙之事 至於一人巡夜 亦未着實 今後則減其禁火部將 令四所巡更部將 巡更之時 兼察禁火之任 如有失火之事 則推責當更部將何如 上曰依爲之."

23) 『승정원일기』 675책, 영조 4년 12월 7일.

결과적으로 인조대 혁파된 수성금화사는 복설되지 못하였지만, 한성부 내 전반적인 금화의 관리는 도성의 행정을 담당한 한성부와 하부기관인 5부, 병조가 담당하였고, 야경하는 순청, 삼군문이 금화를 겸찰하였다. 이와 함께 각 관사 소속의 금화부장도 금화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조선후기 금화시스템은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하에 다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5부 민가의 화재발생 양상과 특징

한성부의 경우 궁궐 및 관사를 비롯해 많은 화재가 발생하였다. 궁궐의 경우 창덕궁 만수전, 인정문, 낙선당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창경궁 통명전 행각의 화재나 인경궁, 경덕궁, 경희궁 등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여 공궐(空闕)의 화재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종각의 연소가 1636년과 1706년 2차례 발생했으며, 관사의 경우는 의금부 창고, 선혜청 별창, 금위영 잡물고, 용호영 미곡창고 등 주로 창고에서 발생하거나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순라군의 성문 초소 막사에서 발생하였다<【부표 1】참조>.

한성부 5부 민가 또한 화마를 피해가지 못하였다. 5부 민가의 화재양상은 뒤의 【부표 2】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부표 2】는 인조 대에서 철종 대까지 한성부 5부에서 발생한 화재를 제시한 것이다.[24] 특징적인 것은 먼저 시전의 화재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이다. 1722년(경종 2) 중부 시전에서 불이나 주전(紬廛) 47칸, 백목전 65칸이 소실되었는데, 이때 왕실 진헌물과 청국세폐

24) 【부표 2】는 인조 대에서 철종 대까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포도청등록』 등에 나타난 화재기록을 제시한 것이다.

방물, 왜인예단 등이 불에 타 6만 냥의 재물피해를 보았다.[25] 1734년(영조 10)에는 백목전에서 다시 화재가 발생하여 500여 명의 시전인들이 생업을 잃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시전을 개축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원래 전방은 시전인들이 자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재력가가 돈을 출자해 지어서 세를 받았는데, 당시 도성민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할 재력가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전가(廛家)를 축조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이다.[26] 따라서 영조는 비변사, 진휼청, 호조 및 오군문에 신칙하여 각기 재정을 덜어서 전방을 개축하여 시전민의 생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였다.[27] 1761년(영조 37)에도 백목전, 면주전, 망문상전이 연소하여 수백 칸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에서는 공사채를 3년에 한해 면제하는 등 3전에 대한 진휼 방책을 논의하였다.[28]

이처럼 시전의 화재는 화재규모가 클 뿐 아니라 피해액도 컸기 때문에 국가는 적극적으로 이들에 대해 규휼하려고 하였다. 더욱이 '국가의 공민(貢民)'이라는 시전인의 역할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들의 진휼에 힘을 기울였다.

다음으로 도성 밖 지역에서 화재가 빈번했다는 점이다. 도성 밖 화재분포 양상은 당시 한성부 지도를 통해서 보면 더욱 분명하다.

---

25) 『승정원일기』 537책, 경종 2년 2월 25일.
26) 『비변사등록』 95책, 영조 10년 5월 17일.
27) 『영조실록』 권38, 영조 10년 5월 15일 경인.
28) 『비변사등록』 140책, 영조 37년 8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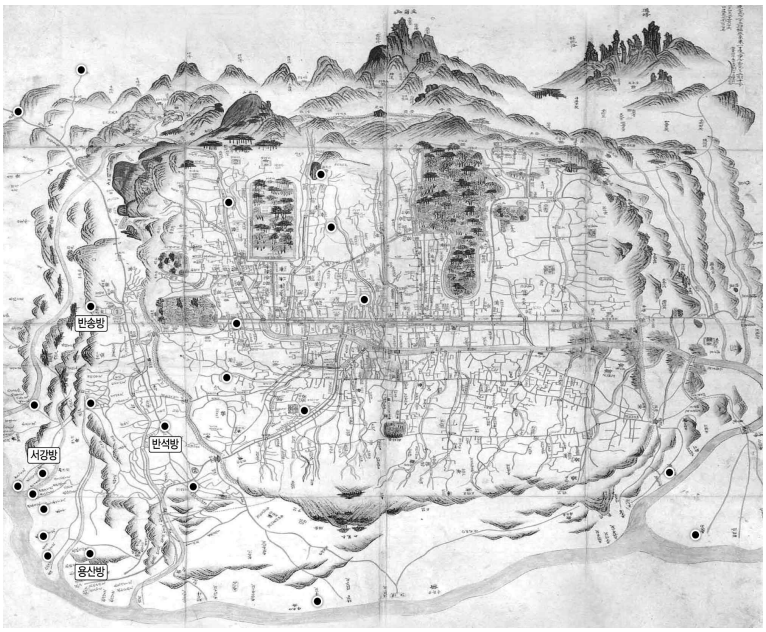

<그림> 18~19세기 한성부 5부의 화재발생 지역
(출전: 이찬, 양보경, 「한양도성도」『서울의 옛지도』서울학연구소, 1994, 35쪽)

위의 지도는 조선후기 편찬된 「한양도성도」로 한성부 5부의 화재발생지역[●로 표시]을 제시한 것이다. 5부의 화재 발생처를 살펴보면, 【부표2】에서 제시한 화재건수 99건 가운데 시전화재 12건을 제외한 87건의 일반 민가 화재 가운데 50% 이상이 도성 밖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북부 불광리계 1건, 남부 둔지계, 두모포, 전곶계 등 6건의 화재를 제외하면 모두 서부 반석방, 반송방, 용산방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석방에서는 1797년(정조 21) 연지계 화재로 46호가 실화됨과 동시에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29] 이

29) 『비변사등록』 185책, 정조 21년 5월 5일.

경우 많은 민가가 피해를 입은 것은 실화처가 대로변으로 가옥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망자와 화재를 당한 사람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한성부로 하여금 강구하도록 하였다.[30] 연지계는 1842년(헌종 8)에도 화재가 발생하여 초가 7칸, 와가 30칸이 실화되었고[31], 미전하계에서는 초가 20칸이 화재로 소실되었다.[32] 반송방의 경우 대부분 지하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1845년(헌종 11) 조용선의 초가 5칸에서 실화하였는데, 인접한 58호가 연소하는 폐를 입었고,[33] 1853년(철종 4)에는 초가 73칸이 소실되었다.[34]

용산방의 경우 1786년(정조 10) 옹리에서 발생한 화재를 주목할 수 있다. 1786년 서부 옹리 화재는 정조가 어사 김계락(金啓洛)을 보내 화재를 당한 백성들을 위로할 정도로 피해규모가 컸다. 옹리는 도성 밖 용산방에 있던 계로서, 독을 구워서 팔았기 때문에 독막, 독마을로도 불렸다.[35] 옹리 화재는 중계(中契)에 사는 한량 김봉현의 집 굴뚝에서 불이 나 서부의 관리들이 아현(阿峴)의 행역지역에서 일하는 역군들을 인솔해 구화작업을 했으나 바람이 심해 인근 하계(下契)로 번지는 등 화재규모가 컸다. 당시 서부 용산방 옹리의 호적을 살펴보면 중계와 하계의 경우 원호가 360호, 협호가 22호로 총 382호였는데, 그 가운데 화재로 소실한 호수가 347호였다. 이러한 수치는 옹리 지역 91%에 해당하는 가옥이 소실된 것으로 아침에 발생한 화재가 저녁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화될 정도로 규모가 컸다.[36]

---

30) 『비변사등록』 185책, 정조 21년 5월 6일.
31) 『포도청등록』 제2책, 임인 12월 23일.
32) 『포도청등록』 제2책, 신축 우변포도청.
33) 『포도청등록』 제24책, 기사 우변포도청.
34) 『포도청등록』 제6책, 계축 우변포도청.
3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 2009.
36) 『승정원일기』 1598책, 정조 10년 4월 3일.

이처럼 옹리 화재의 경우 피해가 큰 이유는 가뭄으로 건조한데다가 폭풍으로 불길이 쉽게 번져 초가의 소실이 많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옹리 지역에는 군교(軍校)의 집이 많아 이들의 피해가 극심하였다. 병조의 금군(禁軍) 7인과 표하군(標下軍) 1명, 금위영의 기사(騎士) 4인과 경표하군(京標下軍) 2명, 어영청의 기사 1인, 경표하군 8명, 양화진의 아병(牙兵) 12명, 대년군(待年軍) 3명, 훈련도감의 군병 56명, 수어청의 표하군 1명 등 총 95명의 군교가 화재로 인해 가옥을 잃는 피해를 입었다.[37] 따라서 정부는 이들에 대한 휼전을 특별히 지방보다 2배로 거행하였으며 3년간 방역도 면제해주었다. 그 이유는 지방의 경우 일정하게 정해진 휼전과 별도로 미포의 지급, 군포의 면제, 요역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반면, 한성부 5부에는 이러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38] 이에 정부는 소실된 382호 가운데 중호(中戶) 5호에는 쌀 각 7두와 전(錢) 각 1냥 4전, 소호(小戶) 157호에는 쌀 각 5두와 전 각 1냥, 잔독호(殘獨戶) 220호에는 쌀 각 3두와 전 각 6전으로 총 쌀 98석 10두와 전 296냥을 지급하였다.[39]

옹리의 경우 5년 뒤인 1791년(정조 15) 다시 상계(上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2호가 소실되었고, 남자 1명과 여자 2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소실된 가옥은 대부분 소호로, 진휼청에서는 불이 난 민가와 사상자에게 1786년(정조 10) 화재와 동일하게 휼전을 시행하였다.[40]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도성 밖의 화재는 경강 주변의 강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위에 제시된 사례 외에도 1744년(영조 20)에는 뚝섬의 강촌에서 불이나 1백 여 호 이상의 가옥이 소실되

37) 『일성록』 정조 10년 4월 1일 갑술.
38) 『비변사등록』 168책, 정조 10년 4월 1일.
39) 『일성록』 정조 10년 4월 1일 갑술.
40) 『비변사등록』 178책, 정조 15년 3월 8일.

어 영조는 이들에게 휼전을 베풀었으며,[41] 서강방 신정리계에서는 양인 김백록의 초가 5칸이 실화된 것을 계기로 인접한 142호가 연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불은 이웃 마을인 창전리계로 번질 정도로 대규모였다.[42] 1797년(정조 21)에는 남부 두모포계에서 한 달 간격으로 각 30호의 가옥이 소실되는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서부 토정리, 용산방 흑석리 등지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였다.[43]

이처럼 도성 밖 지역의 화재가 극심한 데에는 당시의 순라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도성 밖의 경우 지역이 광활하여 17세기 말까지 순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도적방지(禁盜)와 화재예방(禁火)이 목적이었던 좌경(坐更) 또한 같은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군관이 거주하는 촌을 기준으로 인근 지역에서 군병들을 뽑아 가설군관을 주축으로 좌경을 실시하는 방책을 마련하였다.[44]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상황에 따라 가설군관의 수를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방법으로 도성 밖 지역의 순라를 조절하였다. 도적이 성행할 때나 조운선이 삼강에 정박할 때에는 좌우포도청 가설군관과 포도군사들을 다른 군문에서 차출하여 순라와 포도의 임무를 담당하게 하다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다시 환급하는 방책을 시행하였다.[45]

도성 밖 순라는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포도청의 순라를 경강 주변으로까지 확대하여 행순(行巡)을 강화하는 정책에 의해 정비되기 시작했다. 18세기 초반까지 경강변은 삼군문의 군사가 마

41) 『영조실록』 권60, 영조 20년 9월 23일 정유.
42) 『포도청등록』 제6책, 계축 우변포도청.
43) 『비변사등록』 88책, 영조 6년 11월 7일; 『포도청등록』 제5책, 병오 우변포도청.
44) 『승정원일기』 410책, 숙종 29년 3월 25일.
45) 『승정원일기』 765책, 영조 9년 9월 1일; 『승정원일기』 1230책, 영조 40년 5월 4일.

포, 서빙고, 서강 등을 순라했지만 송파에서 한강까지, 용산에서 공암(孔巖)까지는 강 연안의 민호들이 징발되어 순라하였다.[46] 이러한 한강변의 순라를 강화하기 위해 영조는 경강의 12강(江)을 좌우포도청에 분정하여 각각 가설군관 1인을 두어 규찰하게 하였다.[47] 이후 한강, 두모포, 뚝섬, 왕십리, 안암, 전농 등 6강은 경강 지류 중 중심지역으로 좌포도청에 분정되었고, 서빙고, 용산, 마포, 서강, 망원정, 연서는 우포도청에 분정되어 순라를 담당하였다.[48]

조선시대의 경우 화재예방을 위한 금화활동은 대체로 순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영조 대에는 촌락과 궁장사이에 한 개의 협로를 만들어 순라하면서 화재예방을 신칙할 수 있도록 하였다.[49] 하지만 도성 밖 지역의 경우 삼군문과 포도청의 순라시스템이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정비되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정비된 도성 안보다 순라 및 금화업무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도성 밖 지역은 화재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많았다.

4. 구화(救火)시스템의 정비

1) 실화단자(失火單子)의 작성과 보고

조선초기부터 한성부 도성 내에서 궁궐 및 관사, 인가에서 화재

---

46) 『비변사등록』 83책, 영조 4년 3월 26일.

47) 『승정원일기』 1264책, 영조 43년 2월 10일, "(行副護軍李)潤成曰 東西江合六處而左右捕廳分領 各置加設軍官一人 以爲糾察之政矣 向來禁令 本廳擧行 各江字內頗闊 以加設軍官一人 有難遍禁 其時捕將筵稟後 各定加出軍官一人 使之禁飭矣 今則法司掌禁 各江加出一人事 當還減而前旣筵稟加定 不敢自下擅便 敢此仰達 依前還罷 何如 上曰 依爲之."

48) 『萬機要覽』 軍政編1, 捕盜廳 巡邏字內.

49) 『승정원일기』 1076책, 영조 27년 11월 10일.

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실화단자를 올려 왕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이 규례였다. 따라서 금화를 담당한 한성부, 병조, 포도청 등 해당 관서에서는 실화단자를 올렸으며, 화재가 발생하고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관원은 추고되었다.[50]

『포도청등록』에 실려 있는 포도청의 실화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경자 11월 24일
>
> 우변포도청. 본월 24일 축시에 중부 견평방 상미전계 저포전에서 실화하여 와가 133칸과 연접한 진사전 와가 50칸, 망문상전 와가 120칸, 입전 본청(立廛本廳) 와가 50칸이 모두 소실되었는데 이때 금도(禁盜)하여 무사하였음.[51]
>
> 나) 신축 정월 16일
>
> 우변포도청. 본월 16일 미시에 서부 반석방 연지계에에 사는 양인 우맹동(禹孟洞)의 집에서 실화하여 초가 3칸 내 1칸이 소실되었는데 이때 금도하여 무사하였음. 인물이 다쳤으므로 비록 1칸일지라도 실화단자를 올림.[52]

먼저 초기를 올리는 연월일과 관사의 명이 기재되었다. 이후 화재발생시간, 발생지역, 실화규모 등이 기재되었다. 아울러 포도청에서 올리는 문서이기 때문에 도적 발생의 여부가 기록되었다. 『대전회통』에 따르면 인정(人定)에서 파루(罷漏) 사이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즉시 서면으로 임금에게 보고해야만 했는데, 와가 3칸,

---

50) 『승정원일기』 104책, 인조 27년 2월 4일.

51) 『포도청등록』 제2책, 庚子 11월 24일. 庚子十一月二十四日 右邊捕盜廳 本月二十四日丑時 中部堅平坊上米廛契苧布廛失火 瓦家一百三十三間 連接是在眞絲廛瓦家五十間望門床廛瓦家一百二十間立廛本廳瓦家五十間 盡爲燒燼時禁盜無事爲白臥乎事.

52) 『포도청등록』 제2책, 辛丑 정월 16일. 辛丑正月十六日 右邊捕盜廳本月十六日未時量西部盤石坊蓮池契居良人禹孟洞家失火 草家三間內一間燒燼時禁盜無事爲白臥乎事人物致傷故雖一間火單入呈.

초가 5칸 이상의 가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이다. 단,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가옥의 칸수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서면으로 보고하였다.[53] 위 사료의 경우 가)는 시전화재이므로 실화의 규모가 커서 당연히 단자를 올려야 되지만, 나)의 경우는 초가 3칸 중 1칸이 소실된 화재로 실화단자를 올리지 않아도 되었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부에 보고하고 있다. 1칸의 화재이지만 인명피해가 있음을 작은 글씨로 후록하였다.

이러한 실화단자의 법식은 한성부, 순청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 정조는 포도청의 실화단자에 가옥의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 포도청 실화단자의 법의에 대해 승정원에서 계문하도록 명하였다. 병조가 아뢰기를, "하교에 따라 지난 밤 포도청의 순라군관 최창규를 조사해서 물어보니, '서부의 이씨 집 실화를 주장(主將)에게 와서 알렸습니다.' 하였고, 주장은 '실화단자는 초가집은 5칸, 기와집은 3칸 이상일 경우 서계(書啓)를 올리니, 전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탄 것은 초가집 3칸에 불과하고, 인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한성부에서 수계(修啓)할 일이지 본청에서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하여, 하교하기를, "한성부의 초기에 기와집과 초가집의 실화를 몇 칸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진실로 의의가 있거니와, 포도청 단자를 마련한 취지는 곧 도적을 지성껏 막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곳에 불이 났을 때 도적을 막는 것은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두세 칸이든 한 칸이든 반 칸이든 다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이 난 곳은 적고 훔치는 무리들은 많으면 장차 금하여 잡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인가, 일찍이 포도청에 별도의 규식을 정한 수교가 있어서 그러한 것인가? 정원에서 문계하라."하였다.[54]

---

53) 『대전회통』 권4, 병전 금화, "瓦家三間以上, 草家五間以上失火者, 自人定至罷漏登時書啓 人物致傷則雖一間亦爲書啓"

54) 『일성록』 정조 원년 4월 5일 경자.

위 사료는 포도청이 실화단자를 올리는 법의에 대한 논의이다. 법전에 '초가 5칸, 기와 3칸 이하'라는 보고대상의 제한이 있었으므로, 포도청은 이의 예에 따라 초가 5칸, 기와 3칸 이하 가옥의 화재에 대해서는 실화단자를 올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조는 한성부의 경우 법전의 규정대로 보고해도 되지만, 포도청의 경우 실화단자의 작성 취지가 도적을 예방하기 위함임을 강조하며, 실화단자에 칸수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지시하였다.[55] 즉 포도청에서 실화단자를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화재 보고만이 아니라 화재시 발생하는 도적의 피해를 살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화가옥의 칸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실화단자의 보고는 법식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화단자의 경우 앞의 양식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재가 발생한 날 바로 서면으로 보고해야만 하는데, 실화처가 발생했음에도 단자를 올리지 않거나[56] 실화한 지 며칠이 지나서야 뒤늦게 보고되어 해당 관원이 추고되는 경우가 많았다.[57]

그렇다면 도성 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실화보고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나.

> 병조가 아뢰기를, "성내에 실화처가 있으면 해당 부는 순청에게 첩보하고 순청은 본조에게 전하여 보고하고 본조에서는 입계하는 것이 곧 전례입니다. 지난밤 4경, 남부 서소문 월변계에 사는 양인 정백교의 집에서 실화하여 와가 8칸, 초가 4칸이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인물은 특별히 치상한 곳이 없으나 해당 부가 첩보하지 않았으므로 순청이 무사하다고 와서 보고하여 본조 또한 무사하다고 입계하였습니다. 개문 후 순청 하인이 와서 말하니, '해당 부가 나가서 낱낱이 보지 않

55) 『승정원일기』 1397책, 정조 원년 4월 5일.
56) 『승정원일기』 326책, 숙종 13년 12월 20일.
57) 『승정원일기』 206책, 현종 9년 2월 2일; 『승정원일기』 338책, 숙종 15년 12월 21일.

고 무사하다고 첩보했다'고 하니 일이 극히 놀랍습니다. 해당 부관을 추고하고 하인은 본조에서 곤장을 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교하여 말하기를, "윤허한다." 하였다.[58]

위의 사료는 1729년(경종 즉위) 남부 서소문 월변계의 민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보고가 문제가 되어 해당 관리들이 처벌을 받는 기사이다. 이를 통해 당시의 실화보고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다. 양인 정백교의 집에서 일어난 화재의 경우 와가 8칸, 초가 4칸이 소실되었지만 해당 부인 남부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순청은 남부가 실화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조에 실화가 없음으로 보고하고, 순청의 보고를 받은 병조 또한 실화처가 없는 것으로 계문을 올렸다. 도성 내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가 일어난 해당 5부의 부장이 순청에게 보고하고, 순청은 다시 병조에게 보고하는 것이 전례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포도청의 실화 및 금도단자도 병조에게 보고되었다. 결과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5부→순청→병조의 보고체계와 포도청→병조의 보고체계로 이루어져 도성 내 화재와 관련한 순청과 포도청의 실화보고가 병조로 집결되어 왕에게 보고되므로 도성내 구화시스템에서 병조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8) 『승정원일기』 528책, 경종 즉위년 12월 13일, "又以兵曹言啓曰 城內有失火處 則當部牒報巡廳 巡廳傳報本曹 自本曹入啓 乃是前例 而去夜四更頭南部西小門越邊契居良人鄭百僑家失火 瓦家八間 草家四間 盡爲燒燼 人物段別無致傷 而當部不爲牒報 故巡廳以無事來報 本曹亦以無事入啓矣 開門後本廳下人來言 當部不卽枚報 以致以無事牒報云 事甚可駭 當該部官推考下人自本曹決棍何如 傳曰允."

2) 구화작업과 구화기구의 정비

조선후기 궁궐의 화재는 이웃 전각으로의 연소의 염려는 물론, 궁궐 및 도성수비와도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화재 구화시 신중히 작업을 하였다.

> 밤 2경 인화문의 가가에 불이 났다. 그때 임금은 인화문 안의 별실에 거하였는데, 액정의 하례가 인화문 밖에 접근하여 부주의로 불을 낸 것이 인정전 뒷모퉁이의 서까래까지 번졌다. 하례가 달려가 승정원에 고하자 승지, 사관이 창황히 달려왔는데, 각 처의 입직군이 이미 먼저 이르렀으나, 불에 대비하는 기구가 없으며, 비록 물이 있어도 처마가 높아서 미치지 못하고 대궐 뜰이 떠들썩할 뿐이었다. 좌의정 김수항이 빈청에서 달려오고, 병조, 도총부, 옥당 및 여러 곳의 입직 관원이 또한 와서 모였으나, 모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김수항이 말하기를, “외인(外人)을 끌어 들여와야 불을 끌 수 있을 텐데 개문표신(開門標信)을 어떻게 청하여 내오나?”하니, 환관이 이 말을 듣고 달려 들어가더니 표신을 가지고 나오므로 비로소 금호문을 열었다. 허적이 바야흐로 비변사에 직숙하였으므로 또한 이르렀으나 상하가 요란하여 통솔할 수 없었다. 군인 등이 서까래를 잡고 전우(殿宇)에 올라서 기와를 걷어 버리고, 혹 옷을 물에 적시어 긴 장대에 매달아 불길을 쳐도 꺼지지 않았다. 임금이 대신에게 전교하기를, “불이 난 지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완전히 끄지 못하였으니, 만약 불길이 한번 치솟으면 전우가 서로 이어져서 끌 수 없을 것이다. 재궁(梓宮)의 이안(移安)을 급히 의논하여 정하여야 한다.”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
> “반드시 이와 같은 근심은 없을 것이지만, 윤여(輪輿) 같은 제반 기구를 이미 정비하게 하였습니다. 대궐 안에 변이 있으면 두 대장을 부르지 않을 수 없으니, 유혁연은 금중(禁中)에 들어와 시위하게 하고, 신여철은 군병을 거느리고 금호문 밖에서 출입을 단속하게 하소서.”하니, 윤허하였다. 북이 삼경을 알렸다. 불을 끄는 기구가 조금 갖추어진 데다, 불이 서까래 판자에 붙었으나 불길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는 까닭에 완전히 꺼졌다. 2품 이상이 예궐(詣闕)하여 각 전에 문안하고 파하였다. 허적이 별감의 무리들이 불을 조심하지 않는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59]

위의 사료는 인화문 화재 당시의 구화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액정서 하례들의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가 인정전으로 연소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구화활동의 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궁궐 내 구화기구의 미비로 소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위의 인정전 화재의 경우 문제가 된 것은 구화군이 화재발생지역으로 왔지만 구화기구가 마련되지 않아 제시간에 소화 작업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소방장비의 구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소방장비는 공공건물이나 개인 민가를 막론하고 각 처에 모두 물구덩이를 파며, 방화용 흙더미와 구화기구 등을 비치하도록 법전에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연소를 막기 위해 궁성과 궁장의 사방 100척 이내에는 가옥의 축조를 금지하였고, 창고는 30척 이내였다.[60]

인정전 화재 이후 숙종은 병조에게 명하여 궁궐과 한성부내의 금화를 주관하도록 하였으며 화재에 대비하는 구화기구를 시설케 하였다. 그 중 하나가 소금물의 비축이었다.[61] 비전과 여차(廬次) 뿐 아니라 궁궐 인접 가옥의 경우도 모두 궁궐 내 저수(儲水)의 예에 의거하여 방화수를 비축하게 하였다.[62] 당시 소금물을 두는 항아리는 종묘·영녕전(永寧殿)은 15좌(坐), 대전등촉방은 42좌, 세자궁은 15좌였으며, 각 항아리에는 소금 4두(斗)를 두어 준비하는 것이 전례였다.[63]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59) 『숙종실록』 권1, 숙종 즉위년 10월 21일 신해.
60) 『대전회통』 권4, 병전 금화.
61) 『숙종실록』 권1, 숙종 즉위년 10월 22일 임자.
62) 『승정원일기』 242책, 숙종 즉위년 10월 22일.
63) 『승정원일기』 434책, 숙종 33년 2월 30일.

종묘와 궁궐에 10여 석의 소금을 비축해두고 대옹(大甕)·대부루(大釜累) 10좌에 물을 담아 화재에 대비하게 하였다.[64] 이와 함께 궁궐에는 별도로 대옹을 관리하는 내시 1인을 정하여 그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다.[65] 방화 저수시스템과 함께 정약용은 오늘날 살수기에 해당하는 수총(水銃)의 마련을 주장하였다. 그는 한성부 5부 방(坊) 가운데 36곳에다 수총을 설비하고 3군영에서 12곳씩 담당하여 화재가 발생할 시 이것으로 소화하는 방책을 제안하였다.[66]

한편, 조선후기 왕실수비와 임금의 호위를 담당했던 내삼청의 무기 점고에서 소방기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내삼청에서는 사시의 첫 달 10일 전에 군사방(軍士房)의 승지가 명령을 내리면 당일 일직이 품문(稟問)한 뒤에 인정전 월대 위에 나아가서 관에서 급여한 군용물품과 금화기구를 조사, 검열하고, 번장과 금군 등을 위문하며, 사고의 유무를 문서로 상주하였다. 이때 관에서 지급한 금화기구는 12종류로 광이 12점, 삼지갈고리쇠 12점, 삽 12점, 도끼 12점, 낫 12점, 소시랑이(小時郎伊) 12점, 물통 12점, 담목(擔木) 12점, 두레박 12점, 드레박줄 12점, 떡메 12점, 사다리 12점이었다. 이러한 구화기구는 훼손되면 다시 제작하여 비치하였다.[67]

구화기구의 용도는 주로 화재의 연소를 막기 위해 건물이나 인접가옥을 철거하는 작업에 쓰는 것들이었다. 그 밖에 영조대 창경궁 내반원 근처 화재시 훈련도감에서 목면 10여 필을 실화처로 보

64) 『승정원일기』 434책, 숙종 33년 2월 14일.

65) 이처럼 화재예방을 위한 소금의 비축은 산릉에도 마련되었는데, 수호군들이 소금을 훔쳐가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승정원일기』 434책, 숙종 33년 2월 30일).

66) 『경세유표』 제2권 冬官工曹 제6 事官之屬 修城司.

67) 『만기요람』 군정편 2 附 龍虎營.

냈다는 기사에서 목면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면은 구화할 때 화염이 얼굴에 닿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물에 적셔 얼굴을 가리는 한편, 이를 잘라 물에 담가 불을 끄는 재료로 쓰였다.[68]

이러한 구화기구는 정조대에 대대적으로 정비되었다. 1778년(정조 2) 정조는 화재시 사용하는 구화도구의 준비가 허술함을 지적하며 각 항목의 기계들 가운데 낡고 고장 난 것은 개조하고, 쓰기에 편리한 물품들은 새로 준비하도록 하였다.[69] 1784년(정조 8)에는 궐내 행각의 화재 대비를 위해 구화기구를 마련하도록 하여 불시의 수요에 대비하게 하였다. 호남 좌우수영과 통제영에서 바람에 쓰러진 나무 가운데 큰 것으로 통 100개를 만들도록 했으며, 사다리나 불을 끄기 위한 철물과 밧줄은 군문에서 마련해 창고에 넣어 두게 하였다.[70]

둘째, 화재발생 직후 각 처의 입직군들이 구화군으로 참여했으며, 궁궐 화재 시 궐 밖의 사람들이 궐내로 들어와 구화작업을 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궁궐 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조선전기에는 화재 발생을 알리는 대종을 쳤지만, 후기에 이르러서는 나팔을 부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궁궐에 있는 사람은 화재장소로 달려가서 구화작업에 참여해야 했으며 장병들은 당직하는 직소를 떠나지 말아야 했다. 또한 출번한 장병들은 각기 소속 위에, 관사의 관원은 각기 조방(朝房)에 집합하고 여러 관사 소속의 관리, 공인(工人), 경성 5부의 방리민, 출번한 별감 및 각 차비인은 모두 궁궐문 밖으로 집합하여 명령을 기다려야 했다. 궁궐 내 화재조치 매뉴얼은 국왕이 이동하여 거처하는 곳에 있어서의 경우도 동일하였다.[71]

---

68) 『승정원일기』 706책, 영조 6년 5월 1일.
69) 『정조실록』 권6, 정조 2년 10월 3일 기미.
70) 『비변사등록』 167책, 정조 8년 10월 22일.
71) 『대전회통』 권4, 병전 금화.

이러한 궁궐 화재시 구화체제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관사 소속의 관원, 공인(工人), 경성 5부의 방리민, 출번한 별감 및 차비인은 궁궐문 밖으로 집합하여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궁궐 화재 가운데 소규모의 것은 금방 소화할 수 있지만, 대형화재의 경우는 바로 박멸할 수 없기 때문에 궁궐 외부의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했다. 이 경우 먼저 숙위를 신칙한 후 궁궐 안에 있는 자로 하여금 구화하게 하는 한편, 3군영의 대장을 불러 형세를 파악한 연후에 문을 열고 사람을 들였다. 이는 소화 작업이 지연되어 화재범위가 확대될지라도 내란, 역모 등의 우환에 대비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인정전 화재에서도 궁궐 밖의 사람들을 불러들여 소방작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먼저 개문표신을 이용하여 금호문을 개방하였으며, 훈련대장을 궁궐로 불러 시위하게 하였고, 어영대장은 군병을 금호문 밖에 배치하여 출입을 단속하게 하였다.

궁궐 화재시 궁궐 숙위와 관련하여 궐문의 개문(開門) 절차가 중요했는데, 1687년(숙종 13) 창덕궁 만수전 화재 시에는 승정원이 개문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승정원은 빨리 불을 끌 목적으로 궁궐 숙위를 하는 군영의 대장이 도달하지 않아 궁궐수비가 불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구화군을 궁궐 안으로 끌어드리기 위해 먼저 개문하여 온갖 잡인이 난입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병조 또한 화재 후 조치를 재빨리 하지 못해 금군과 입직한 장졸이 서로 뒤섞여 분별할 수 없어 궁궐의 숙위가 엄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대신들은 궁궐 숙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병조판서, 훈련대장, 어영대장, 총융사의 처벌을 요하기도 하였다.[72]

1722년(경종 2) 창경궁 통명전 행각 화재시에도 화재규모가 커

72) 『승정원일기』 324책, 숙종 13년 9월 9일.

서 입번한 별감만으로는 구화할 수 없기 때문에 숙위하는 군병들을 불러 구화활동을 했다. 입직한 홍화문, 금호문의 군병 등이 구화를 했는데 구화인 수는 모두 188명이 될 정도로 화재의 규모가 컸다.[73] 통명전 실화시 병조는 궁궐 구화를 위해 달려온 입직 군병의 수를 일일이 점고한 후, 각기 소속처로 돌려보냈는데,[74] 점고를 하는 것은 외인의 출입을 막아 궁궐수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병조는 숙위하는 병사와 구화하는 군인을 명백히 구별하여 화재로 인한 혼란으로 도성 방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한편, 궁궐 화재 시 궐내로 들어오는 외인 가운데 경성 5부의 방리민을 주목할 수 있다. 조선전기에는 궁궐화재에 대비하기 위하여 5부마다 각기 금화 담당 구역을 설정하였다. 경복궁 화재시 중부는 수진방, 징청방, 관광방, 순화방, 의통방이, 서부는 적선방이 구화하였다. 창덕궁의 경우는 북부는 양덕방, 광화방이, 중부는 정선방, 경행방이 구화하였으며, 창경궁은 동부 연화방, 서운방, 덕성방, 연희방에서 구화를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화재가 발생했다는 종소리가 울리면 바로 각 호의 남녀를 거느리고 각기 급수하는 기구를 가지고 궐문 밖이나 각 궁문 밖에 대령하게 하였다.[75]

조선후기에도 이와 같은 구화시스템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 (가) (행도승지 조)영복이 말하기를, "신이 밖에서 들으니 내관 무리들이 훈조(燻造)로 인해 불이 났다고 하니 진실로 매우 놀랍습니다."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구화할 때 방민을 불러 모았다고 하는데, 빈 궁

---

73) 『승정원일기』 536책, 경종 2년 정월 13일.

74) 『승정원일기』 536책, 경종 2년 정월 6일.

75) 류승희, 「조선초기 한성부의 화재발생과 금화도감의 운영」 『서울학연구』 19,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2, pp. 22-23.

궐이 비록 시어소(時御所)와 다를지라도 궐문을 개폐할 때 승정원이 와서 품계하는가?"하니 조명신이 말하기를, "와서 품계하는 일은 없습니다."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비록 본원에서 아뢰지 않을지라도 혹 병조는 와서 보고하는가? 주서(注書)가 나가서 물어보고 오라" 하니 명신이 말하기를, "주서가 병조에게 물으니 이른 새벽에 비로소 실화 보고 문서가 올라왔고 궐문 개폐의 여부는 원래 와서 보고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하였다.[76]

(나) 신치운이 창경궁 실화를 아뢰기를, "신 장붕익이 명을 받고 즉시 달려가니 좌변포도대장 정수송, 한성부우윤 김취로 또한 와 있으므로 신이 군병과 포도군을 거느리고 각별히 신칙하여 한편으로는 궐문과 궁궐 안을 방수하고 한편으로는 방민과 급수군을 재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서둘러 박멸하게 했고 연접한 가옥은 우선 몇 칸을 훼철하여 연소하는 근심을 끊었습니다."하였다.[77]

위 두 사료에서 보면 구화인으로 5부 방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가)의 사료는 경덕궁 화재시 구화상황으로 구화인으로 방민이 소집된 양상을 알 수 있다. 나)의 사료는 1730년(영조 6) 창경궁의 실화양상으로 이 화재로 사옹원 및 궁방과 소주방 등 49칸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78] 창경궁 화재시 불이 번져 입직한 군병만으로는 구화를 할 수 없자 방민으로 하여금 급수를 독촉, 도성 내의 방민 중 급수하러 오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구화작업이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방민들은 금천교의 물과 사복시의 우물물을 길어다가 소화 작업을 시행했지만 이로도 부족하여 통명문 내의 우물물까지 길어다가 작업을 하였다. 공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수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화방의 장용영 소속 민호에 대한 분계절목에서도 방민의 경우 '좌경, 도로수치, 제설작업, 구화 등의 일은 법의가 매우 중요하

76) 『승정원일기』 632책, 영조 3년 2월 15일.
77) 『승정원일기』 706책, 영조 6년 5월 2일.
78) 『영조실록』 권26, 영조 6년 5월 1일 무진.

다'[79]고 하여 화재시 구화작업이 방역은 아니었지만 5부 방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지목되었다.

조선전기와 같이 궁궐화재에 대비하기 위하여 5부별로 궁궐 구화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궁궐화재에 방민이 출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궁궐 화재시 관-민 구화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맺음말

본 논문은 조선후기 수성금화사 혁파 이후 한성부의 화재발생 양상과 화재시 도시 관리 시스템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살펴본 것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후기 금화업무는 관-관 협조체제 하에 다원적으로 이루어졌다. 화재로부터 도시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이것이 여의치 못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과정에서의 관사 간 협력 시스템이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한성부의 경우 수성금화사의 혁파 이후 소방업무는 한성부, 병조를 중심으로 5부, 포도청, 순청, 삼군영 등에서 담당하여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다원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병조는 순청과 포도청으로 부터 실화보고를 받는 최종적인 관사로 금화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둘째, 화재진압 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시스템이 강조되었다. 이는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압을 하기 위해서인데, 진압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역할이 조정되었다. 즉, 궁궐 화재시 궁궐 숙위와 구화활동에 대한 업무의 명확성이 구분되었던 것이다. 한성부는

79) 『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 5월 26일 정사.

조선왕조의 수도였기 때문에 안정을 위한 도시의 관리는 곧 국가 방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궁궐 내 화재시 구화와 궁궐수비 업무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규모가 큰 화재일 경우 궁궐 내의 숙직군 만으로는 구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궐 밖의 사람들이 궐내로 들어와야 했다. 이때 삼군영의 경우 숙위 업무를, 관사의 관원, 공인, 5부 방민 등은 구화 업무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민의 공조 시스템도 작동하였다. 궁궐 화재나 일반 민가 화재시 5부 방민의 구화활동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5부의 방민은 지역별로 관사 및 궁궐에 소속되어 화재시 구화활동을 하였는데, 도성민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임무의 하나일 정도로 막중했다.

셋째, 한성부 화재양상의 특징으로 도성 밖 화재가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서부 반석방, 반송방, 용산방에서 다수 발생하였는데, 이들 지역의 대부분은 경강주변의 강촌이었다. 도성 밖 지역의 경우 삼군문과 포도청의 순라시스템이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정비되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정비된 도성 안보다 쉽게 화재에 노출되는 경향이 많았다.

이처럼 조선후기 한성부의 경우 소방 전담 관사는 혁파되었지만, 화재의 위기 속에서 도시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관-관체제와 관-민체제가 동시에 구축된 도시방재 시스템을 운영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지방 도시에서도 동일하게 운영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화재의 피해규모가 수도인 한성부보다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지방도시의 경우 구화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더욱이 조선후기 관-민 공동의 구화시스템은 근대 소방조직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식민지기 소방 기본조직인 소방조가 민간의 자치 조직인 것은 이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부표 1】 17~18세기 궁궐 및 관사의 화재실태

연도	월	화재장소	연도	월	화재장소
1635	2	治所 실화	1734	1	예문관 의막 실화
1636	11	종묘 집사청 실화		1	숙장문 실화
1639	7	사복시 실화	1735	3	시소 역서가가 실화
	12	인경궁 실화	1743	10	훈련원 입직처소 실화
1647	2	사재감 실화	1744	10	창덕궁 인정문 실화
	12	내빙고 관원청	1747	10	중궁 차비 실화
1648	2	야로소 실화	1751	11	사옹원 실화
1649	2	종루 실화	1756	5	창덕궁 낙선당 실화
	10	영접도감 주방 실화	1757	12	공작청 실화
1653	3	흥인문 실화	1758	1	비각 수직가 실화
1654	12	내사복 실화	1761	7	금위영 잡물고 실화
1668	12	무과 일소 실화	1766	12	사옹원 온돌실화
1681	1	경덕궁 내탕고 실화	1775	5	어영청 실화
1685	1	종각연소	1780	7	궁궐시민당화재
1686	1	서빙고 실화		11	경모궁 실화
1687	9	창덕궁 만수전 실화	1781	5	훈련도감 염초청 실화
1694	3	의금부 창고 실화		10	명례궁 북변 궁장실화
1698	10	試所 실화	1782	11	홍북문 파수막 실화
	11	경희궁 승휘전 실화	1783	9	북악 축성처 실화
1706	3	종묘화재		12	목멱산 봉수대 방화
1707	2	역서 가가 실화		12	선원전 서변 행각 실화
1708	10	군기시 실화	1784	10	궐내 행각실화
1710	4	예빈시 실화		11	훈련도감 실화
1719	1	남별영실화	1785	4	사복시 마굿간 실화
1722	1	창경궁 통명전 행각 실화	1786	3	용호영 쌀 창고 실화
	3	사포서 관사 실화		6	묘소도감 옹가 실화
1724	1	동궁 재실 주방 실화	1787	9	영숙문 위배처 공막 1칸 실화
1727	2	경덕궁 실화	1788	2	소의문 북변 파수막 실화
	12	금위영 실화	1789	윤5	소녕원 방화
1728	12	시강원 대청 실화	1792	11	홍북문 좌경막 실화
1730	5	창경궁 실화		12	집춘문 군보막실화
	11	북부 숙빈방 침실화재	1795	3	염초청 실화(태평교 남단)
1732	윤5	선혜청 별창 화재	1798	5	용암사 창고 실화
1733	11	문과회시 시소 실화	1799	12	내빙고 고사 실화

【부표 2】 한성부 5부 민가의 화재실태

연도	월	5부	화재장소
1649	11	서부	서부마포 화재
1650	4		영접도감 서문밖 민가 실화3가
1657	4		영접도감 인근 실화
1668	2		한성부 여가화재
	2		궐문 밖 여가 실화
	3	남부	남부 76호 실화
1676	4	중부	종루 근처 실화
1685	1		시전실화
1715	7	남부	남부 인가 화재
	7	서부	서부 시목가가 화재 40호
1720	10		광순문 밖 무예별감 가가 실화
	12	남부	남부 서소문 월변계 실화
1721	11		동강 뚝섬 인가 30호 실화
1722	2	중부	시전 100여 칸 실화
1723	2	중부	중부 김귀석가 실화
1730	1	서부	서부 태평관계 인가 4칸 실화
1730	11	서부	서부 토정리 40여 호 실화
1731	5		경강 강촌 실화
	9		봉상시근처 여가 실화
1733	10		시전 실화
1734	5		백목전 실화
1736	3		서빙고 2계 실화
1737	9		시전 실화
1741	4		종묘 동구 여가 실화

1742	5		도고 가사 실화
	9	동부	연지동 여염 3가 실화
1744	9		뚝섬 강촌 백 수십호 실화
1745	1		목화전 실화
1753	4	서부	서부 취현동 실화
1757	4		동교 민가 방화
1761	8		시전화재
	9	중부	중부 대사동 실화
1777	4	서부	서부 연지계 실화
	5	서부	서부 용산방 98호 실화
1778	9	서부	서부 지하계 실화
1784	11	남부	남부 회현동 실화
1786	3	북부	북부 박석현 3가 실화
	4	서부	서부 옹리 347호 실화
	11		주전소 인접 가가 실화
1791	3	서부	서부 옹리 72호 실화
1793	4	서부	서부 토정리, 흑석리계 8호 실화
1796	2	서부	서부 수저답계 실화
1797	2	동부	동부 관동 인가 실화
	4	남부	남부 두모포계 30호 실화
	5	서부	서부 반석방 연지계 46호 실화
	6	남부	남부 두모포계 30호 실화
	윤6	서부	서부 연지계 실화
1798	2	남부	남부 송현계 와가 36칸 실화
	5	남부	남부 둔지계 실화
	10	서부	서부 신수철리 실화

1799	5	남부	남부 전곶 민가 9호 실화
	9	북부	북부 불광리계 실화
	12		지전 실화
1800	6	서부	서부 반송방 지하계 실화
1802	5	남부	남부 쌍리동 민가 실화
1804	3	서부	서부 옹리 민가 140여 호 실화
1805	4		시전실화
1807	2	북부	북부 신사동계 민가 실화
1811	2	서부	서부 용산방 민가 실화
1812	10	서부	서부 토정리 민가 실화
1815	12	동부	동부 왕십리 민가 실화
1840	8	서부	서부여경방 東嶺洞契 와가 43칸 실화
	11	중부	중부 견평방 상미전계 저포전 실화 와가 133칸, 연접한 진사전 와가 50칸, 망문상전 와가 120칸, 입전 본청 와가 50칸
1841	1	서부	서부 반석방 연지동계 초가 1칸 실화
	3	중부	서린방 종루서변계 면자전 와가 38칸 실화. 연접한 와가 25칸
	8	서부	용산방 도화동계 초가 13칸 실화
	12	서부	반석방 미전하계 초가 20칸 실화
1842	12	서부	반석방 연지계 초가7칸, 와가 30칸 실화
	1	남부	회현방 이간병문계 와가 50칸 실화
1843	9	서부	용산방 옹리 상계 초가 37칸 실화
1844	5	중부	서린방 종로서변계 면주전 95칸 실화
1845	8	서부	반석방 연지계 초가 5칸 소실
	8	북부	관광방 와가 50칸 소실
1846	2	서부	용산방 도화동계 초가 13칸 와가 5칸 실화
	3	중부	수진방 수진동계 제용감 창고 실화

	8	서부	용산방 흑석리계 초가 20칸 실화
	10	남부	회현방 이간병문계 초가 10칸, 와가 3칸 반 실화
1852	2	서부	여경방 동령동계 와가 22칸 초가 29칸 실화
	4	남부	회현방 소공동계 양인 김홍석 와가 4칸 소실. 연접한 16호 ??칸, 호조행랑 와가 49칸 초가 22칸 실화/와가 53칸 초가 47칸
1853	2	서부	반송방 지하계 초가 73칸 실화 중 연접가호 53칸
	4	서부	서강방 신정리계 양인 김백록 초가 5칸 실화. 연접한 142호 실화. 인근 창전리계로 번짐.
	12	서부	용산방 옹리상계 훈국군 장성보집에서 실화 초가 15칸 소실. 연접한 9호 99칸 소실
1855	10	북부	연희방 합정리계 빙고 四庫 실화. 인접 5호 실화
	11	북부	안국방 대안동계 와가 4칸, 초가 6칸 소실
	11	서부	황화방 취현동계 와가 7칸 소실
	12	북부	진장방 삼청동계 와가 40칸 실화
1856	1	서부	용산방 여촌리계 초가 5칸 소실. 연접한 3호 실화
	12	북부	관광방 부계 초가 6칸 실화. 연접 1호 실화
1857	1	남부	둔지방 서빙고 2계 초가 11칸 소실
	2	서부	용산방 도화동외계 초가 5칸 실화
	3	서부	반석방 우순청계 와가 17칸 실화
	3	북부	관광방계 초가 12칸 실화
	4	북부	관광방 부계 초가 10칸 실화. 연접 1호 실화
1858	1	서부	황화방 소정동계 초가 6칸 실화
	1	중부	서린방 이조내계 와가 3탄 실화. 연접 7호 소실
	1	북부	진장방 삼청동계 초가 7칸 소실
	1	서부	반송방 거(車)자리계 초가 11칸 실화
	1	북부	순화방 사재감하패계 초가 8칸 실화. 연접1호 실화
1869	10	서부	반송방 지하계 조용선의 초가 5칸 실화. 연접 58호 실화

참고문헌

1. 자료

『경국대전』
『경세유표』
『대전회통』
『萬機要覽』
『文獻攷略』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포도청등록』

2. 논문

김용국, 「近朝鮮初期 서울의 防水防火대책」, 『향토서울』 3,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1958.
류승희, 「조선초기 한성부의 화재발생과 금화도감의 운영」, 『서울학연구』 19,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2, pp. 22-2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 2009.
손정목, 「청소상태와 소방제도」, 『조선시대 도시사회연구』, 일지사, 1977.
이찬. 양보경, 「한양도성도」, 『서울의 옛지도』, 서울학연구소, 1994.
정태헌, 「조선초기 禁火施策에 관한 연구」, 『동국사학』 23, 동국대학교사학회, 1989, pp. 58-99.

Fire Incidents of Hanseongbu(漢城府) and the Operation of the Urban Disaster System during the 17th to 18th Centuries

Yoo, Seung-Hee

This paper looked into the pattern of fire incidents covered by Hanseongbu and the operation pattern of the urban disaster prevention system during the later Joseon period. The characteristic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firefighting during the later Joseon period was carried out multi-dimensionally under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For Hanseongbu, since the abolishment of Suseonggeumhwasa(修城禁火司), firefighting was carried out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focusing on Hanseongbu and Byeongjo(兵曹) whereby it was taken charge of by five departments(5部), the police bureau(捕盜廳), Suncheong(巡廳), and Samgunyeong(三軍營). In particular, Byeongjo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in firefighting as the ultimate government office that received fire reports from Suncheong and the police bureau.

Second, during the firefighting process, a cooperative system with relevant organizations was emphasized. In order to put out fires promptly, the role with relevant organizations was adjusted. That is, the protection of the palace during a fire in the palace and the firefighting activity were clearly distinguished. Concerning Samgunyeong, it was in charge of Suggui, whereas government officers, general people of five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office were responsible for firefighting. During the process, the general public of five departments belonged to the government office and the palace according to region so that the government-people cooperative system that carried out firefighting during fires also operated.

Third, as a characteristic of the pattern of fires of Hanseongbu, there were many fires outside the castle. Among others, many fires occurred in Banseokbang (盤石坊), Bansongbang(盤松坊), and Yongsanbang(龍山坊) in the western area. Then, most of the regions were by the riverside around the Gyeonggang(京江). For regions outside the castle, the Sulla(巡邏) system of Samgunmun and the police bureau were organized only after the later 18th century; therefore, it was more likely that they would be more easily exposed to fires than the inside of the castle where a system had been organized already.

Key words: Hanseongbu(漢城府), fire, firefighting(禁火), Suseonggeumhwasa (修城禁火司), Suncheong(巡廳), Samgunyeong(三軍營), Sulla (巡邏)

유승희
소속: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매촌 한신아파트 202-1201호
전화번호: 010-3366-1324
전자우편: jiin1004@lycos.co.kr

이 논문은 2013년 3월 11일 투고하여
2013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4월 30일 게재 확정함.